

협약서

강원도 교육청 노동조합(이하 “갑” 이라 칭함)와
아쿠아키즈 (이하 “을” 이라 칭함)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갑에 소속된 직원 및 조합원이 아쿠아키즈 및 관련 시설을 이용 시 필요한 지원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

갑”에 소속된 임직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

제3조(의뢰 및 절차)

교육(수강) 및 시설 이용 시 “갑”의 협회회원임을 알린다.

제4조(협약의 의무)

“을”은 “갑”의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제반 행정사항을 신속, 정확하게 우선 처리한다.

제5조(협력사항)

1. 교육(수강)료 감면(직계가족 - 본인, 배우자, 양가부모, 조부모, 자녀)
- “을”의 교육(수강)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총액의 16%를 감면한다.

제6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, “갑”, “을” 상호간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계속하여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, 본 협약서를 변경 또는 해약코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공문서로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상호협의를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상호협의를 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협약서 보관)

각 기관은 본 협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 년 7 월 23 일



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

춘천지부장

김창희



대표

김근영

